

#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9년 2월 20일
- 회부일자 : 1999년 2월 20일

### 3. 제안이유

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4. 주요골자

-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의 산출기준 근거조항 마련
  -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(안 제1조)
  -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기준에 의거 산출 (안 제2조 제1항)
- 용어의 정비
  - 현장조사 및 시험 →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 (안 제2조 제2항)
  - 시험의뢰자는 시험결과 → 품질시험 및 검사의뢰자는 성과표 (안 제4조)
  - 공용조사 및 시험 →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품질시험과 검사 (안 제5조)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1997. 8. 25 건설교통부령 제115호로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
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,

주요 골자는,

첫째,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의 산출기준 근거조항을 마련하고

둘째, 용어의 정비에 있어

안 제2조 제2항, 제4조, 제5조를 모법과 동일한 용어로 개정하여 체계적  
이고 합리적인 수수료 산출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 
타당하다고 인정되나,

다만 안 제3조 (징수방법) 제1항중 “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  
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”로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일방  
적인 손해를 강요하는 행정편의 주의적인 내용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항  
에 있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됨.